

開放經濟下的 知的財產權 國際化

王 允 鍾*

〈 목 차 〉

- | | |
|--------------------------|-------------------------|
| I. 序論 | IV. 知的財產權과 國際貿易理論 |
| II. 技術開發投資의 國際比較 | V. 知的財產權 國際化와 開途國의 經濟發展 |
| III. 知的財產權 保有現況에 대한 國際比較 | VI. 知的財產權保護와 直接投資 |

1. 序論

知的財產權 保護의 國際化는 國際貿易, 直接投資 등에 直 間接的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國際貿易과 관련하여 볼 때, 各國의 輸出競爭力을 결정하는 요소로 賦存資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이 技術이다. 특히 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의 증대는 일국의 比較優位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지는 것이라는 比較優位 概念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各國은 比較우위의 획득을 위하여 치열한 技術開發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획득된 比較優位의 유지를 위해서 技術保護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附加價値가 높은 尖端産業에 있어서 이와 같은 技術開發 競爭과 保護는 國內市場의 차원을 넘어서서 國際市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知的財產權 保護의 國際化는 일국의 比較우위를 결정하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直接投資가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貿易 못지않게 중요한 交易樣式으로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등장하였다. 直接投資는 貿易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國家間의 유대를 밀착시키고, 더우기 國家間 技術移轉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 특히 先進國의 多國籍企業이 後進國에 진출할 경우 先進國 企業의 技術保護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만약 後進國 企業이 先進國 企業의 技術을 쉽게 모방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先進國 企業의 直接投資는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

本 研究에서는 開放經濟下에서의 知的財産權 保護가 가져다주는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第2章에서는 技術開發投資의 國際比較를 통하여 知的財産權을 창출하는 투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술개발투자의 현주소를 點檢한다. 第3章에서는 知的財産權의 保有現況을 特許權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開途國中에서는 가장 先進國에 근접했으나 先進國에 비하여 아직 知的財産權의 권리자로서 충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문제를 國際貿易理論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를 概括한다. 第5章에서는 知的財産權 保護와 直接投資 留置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第6章에서 知的財産權 國際化 問題를 經濟發展論的 視角에서 再照明하고 第7章에서 本 研究로부터 얻은 示唆點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技術開發投資의 國際比較

各國은 比較優位의 획득을 위하여 치열한 技術開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획득한 比較優位의 유지를 위해서 技術保護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技術開發投資의 규모, 혹은 그 결과로서의 特許權 등 産業財産權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각국의 知的財産物의 規模, 특히 産業關聯 知的財産物의 규모를 측정하는 유용한 수단일 것이다. 本章에서는 知的財産權을 산출(Output)로 간주할 때, 投入(Input)이라고 말할 수 있는 研究開發投資의 國際比較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더우기 技術開發投資의 效率性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投資의 收益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實證分析은 開途國의 경우 관련자료를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측정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開途國은 技術開發에 있어서 獨創的인 발명보다는 소위 適應的(adaptive)인 技術開發이나 模倣 등을 통하여 技術蓄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實證分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表 1〉 R&D의 國際分布 : 1985-1987

(1982年 경상U.S. 백만달러기준)

| 地 域 | R&D 總額 | 比 率(%) |
|---------|---------|--------|
| 아프리카 | 1,000 | 0.4 |
| 南 美 | 4,000 | 1.5 |
| 아시아* | 11,000 | 4.1 |
| 開途國 | 16,000 | 6.0 |
| 蘇聯 및 東歐 | 54,000 | 20.0 |
| OECD | 200,000 | 74.0 |
| 合 計 | 270,000 | 100.0 |

資料 : NSF, 1989.

註 : *는 中東 및 中國 포함.

〈表 2〉 主要國의 技術開發投資

(U.S 십억달러 기준)

| 國 名 | R&D (\$) | R&D/GNP | 政府負擔比率(%) |
|------------|----------|---------|-----------|
| 美 國(1990) | 146.2 | 2.72 | 43.7 |
| 日 本(1991) | 84.4 | 2.77 | 16.8 |
| 獨 逸(1989) | 34.5 | 2.89 | 33.2 |
| 프랑스(1990) | 28.9 | 2.43 | 47.5 |
| 英 國(1990) | 21.7 | 2.23 | 38.5 |
| 이태리(1990) | 14.2 | 1.31 | 51.5 |
| 캐나다(1990) | 8.0 | 1.47 | 44.0 |
| 스웨덴(1989) | 5.3 | 2.91 | 38.4 |
| 韓 國(1991) | 5.5 | 2.02 | 19.6 |
| 스위스(1989) | 5.1 | 2.72 | - |
| 네덜란드(1989) | 4.8 | 2.16 | - |
| 스페인(1990) | 4.2 | 1.01 | 51.3 |
| 中 國(1988) | 3.8 | 0.93 | 50.8 |
| 濠 洲(1988) | 3.3 | 1.93 | - |
| 핀란드(1990) | 2.6 | 1.67 | - |
| 臺 灣(1990) | 2.6 | 1.65 | 45.8 |
| 벨기에(1988) | 2.5 | 1.03 | - |
| 印 度(1986) | 2.1 | 1.38 | - |
| 싱가폴(1987) | 1.8 | 0.87 | 38.3 |
| 브라질(1982) | 1.7 | 0.29 | - |
| 泰 國(1988) | 1.2 | 0.29 | 64.2 |

資料 : 『産業技術主要統計要覽』1993,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研究開發投資(R&D)의 國際分布를 보면 <表 1>과 같이 先進國(OECD)의 비중이 74.0%이고 舊蘇聯 및 東歐를 포함할 경우 94.0%로 開途國의 비중은 불과 6.0%에 불과하다. 開途國中에서도 주로 아시아 國家들이 R&D 投資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主要國의 技術開發投資 現황을 살펴보면 <表 2>와 같다.

우리나라는 主要 先進國과 비교해 볼 때 技術開發投資의 총액에 있어서 상당히 뒤지고 있으나 經濟規模를 고려해 볼 때 對GNP 비율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先進國에 근접해 있다. 對GNP 비율에 있어서 美國, 日本, 獨逸 등 주요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개도국들 중에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리, 캐나다 등을 앞서고 있다. 研究開發投資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統計는 政府가 투자부담을 얼마만큼 하느냐이다. 대부분의 開途國의 경우 80% 이상을 政府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表 2>를 보면 主要 先進國의 경우 대체로 政府負擔比率는 開途國보다 낮아서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臺灣, 싱가포르 등도 대체로 先進國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日本과 우리나라만은 유독 政府負擔比率가 매우 낮다.²⁾

이는 企業이 技術開發投資의 主役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장 先進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技術開發投資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아직은 研究施設의 擴充 및 연구기자재 구입에 상대적으로 많은 資本이 투자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企業單位의 연구개발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長期的으로 企業이 研究開發의 主體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지만, 아직은 政府의 지속적인 技術研究開發 投資支援이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政府의 研究開發은 公共財의 특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研究開發의 성과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研究開發의 加速化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美國은 技術行政支援 機能을 강화하고 生産技術開發 支援強化 등을 골자로 하는 93年 『國家競爭力強化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同法은 기술개발에 대

1) 印度는 86%,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각각 95%, 90%로 政府의 研究開發投資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開途國이 그만큼 研究開發成果를 私有化할 동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知的財產權 保護를 위한 필요성도 줄어든다.

2) 우리나라는 技術開發投資의 재원별 구성비에 있어서 政府公共部門의 부담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81年 43.6%에서 91년에는 19.6%로 크게 낮아져 技術開發投資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民間部門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表 3〉 主要國의 研究開發投資의 部門別 分布(1986年)

(단위: %)

| 國 名 | 產 業 | 教 育 | 一般科學 |
|-------|------|------|------|
| 美 國 | 73.5 | 6.4 | 12.8 |
| 日 本 | 54.9 | 18.8 | 10.1 |
| 韓 國 | 39.1 | 30.6 | 22.3 |
| 싱가폴 | 31.6 | 30.2 | 23.9 |
| 브라질 | 30.1 | 26.9 | 53.0 |
| 필리핀 | 24.4 | 22.0 | 53.6 |
| 아르헨티나 | 28.1 | 24.1 | 38.6 |
| 印度 | 24.4 | 22.0 | 53.6 |

資料 : Evenson (1990).

한 政府投資 擴大 및 民間投資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企業環境의 造成, 技術人 力 養成을 위한 지속적인 教育, 訓練 프로그램의 擴充, 基礎科學에 대한 지원 등 을 主要內容으로 담고 있다. 國家競爭力 강화를 위해 先進國이 法制定을 통하여 서까지 적극적인 政府主導의 政策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技術開發投資의 확충을 위한 政府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技術開發投資의 부문별 분포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開發國들이 선진 國과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를 보면 美國은 73.5%, 日本은 54.9%로 전체 技術開發投資 중 産業技術 및 製品開發에 투자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다른 開發國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지만 39.1%에 불과하다. 후진국일수록 産業技術開發보다는 정부주도의 科學技術開發에 치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先進國의 知的財産權 保護가 일반적으로 科學技術의 보호보다는 産業技術의 보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先 後進國間의 기술개발투자의 성격이 크게 차이난다 는 점이 先 後進國間의 知的財産權 보호실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技術開發投資중에서 산업기술개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産業技術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고 이는 産業財産權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知的財産權 보호강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Ⅲ. 知的財產權 保有現況에 대한 國際比較

前章에서 知的財產權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投入要素로 研究開發投資의 國際比較를 시도하였다. 先 後進國間 比較에 있어서 研究開發이라는 投入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을 목격하였다. 총량적인 研究開發投資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연구개발의 주체와 내용면에서 先 後進國間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先 後進國間 研究開發投資의 投入面에서의 차이가 知的財產權의 보유에 있어서 先 後進國間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主要國의 特許登錄 推移를 內 外國人別로 살펴보자. <表 4>을 보면 美國, 日本, 獨逸 등 주요 先進國의 경우 內國인의 자국 特許登錄에 있어서 開途國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수의 特許登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開途國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브라질, 중국, 멕시코 등을 앞서고 있고 최근 印度가 내국인의 特許登錄이 급감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다. 즉, 研究開發의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指標로 내국인의 特許登錄面에서, 우리나라가 先發開途國으로서 단연 우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登錄을 살펴보면 美國이 단연 우위를 지키고 있고 獨逸, 英國, 프랑스 등 주요 先進國들의 경우 外國人の 特許登錄이 내국인 보다 높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內國人の 特許登錄에 비하여

<表 4> 主要國의 內 外國人別 特許登錄 推移

(단위: 건수)

| 國 名 | 內 國 人 | | | | 外 國 人 | | | |
|-----|--------|--------|--------|--------|--------|--------|--------|--------|
| | 1978 | 1984 | 1988 | 1991 | 1978 | 1984 | 1988 | 1991 |
| 美 國 | 40,979 | 38,364 | 40,497 | 51,184 | 25,123 | 28,837 | 37,427 | 45,330 |
| 日 本 | 37,648 | 51,690 | 47,912 | 30,453 | 7,856 | 10,110 | 7,388 | 5,647 |
| 獨 逸 | 11,581 | 11,402 | 15,704 | 16,756 | 11,933 | 10,356 | 23,186 | 26,434 |
| 英 國 | 8,464 | 4,442 | 4,447 | 4,492 | 32,359 | 14,425 | 25,117 | 29,582 |
| 프랑스 | 8,083 | 7,651 | 8,822 | 9,221 | 22,447 | 16,015 | 23,134 | 26,360 |
| 韓 國 | 133 | 297 | 575 | 2,553 | 294 | 2,068 | 1,599 | 6,138 |
| 브라질 | - | 582 | 487 | 341 | - | 4,305 | 2,553 | 2,078 |
| 中 國 | - | - | 617 | 1,311 | - | - | 408 | 2,811 |
| 泰 國 | - | 8 | 1 | 12 | - | 12 | 85 | 141 |
| 멕시코 | 135 | 138 | 274 | 129 | 1,525 | 1,599 | 3,317 | 1,231 |
| 印 度 | - | 303 | 861 | 358 | - | 1,188 | 2,593 | 1,214 |

資料 : 『特許廳 年報』各號, 特許廳.

外國人の 特許登録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開途國의 경우 대체로 外國人の 特許登録이 內國人の 特許登録을 훨씬 앞서고 있다. Evenson(1990)은 技術輸入國에 있어서 外國人の 特許登録이 內國人の 特許登録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外國人の 特許登録이 단순히 技術保護의 차원을 넘어서, 外國人 特許權者가 技術輸入國과 技術貸貨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先決措置로 特許登録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側面에서 <表 4>에서 美國, 日本을 제외한 대부분의 國家가 技術輸入國으로 간주될 수 있다.

<表 4>에서 주목되는 또 한 가지는 先進國間의 상호 特許登録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先進國間의 技術交易이 先 後進國間의 技術交易보다 훨씬 활발하다는 점은 선진국이 技術開發뿐만 아니라 技術交易을 통하여 상호간에 더욱 활발한 技術蓄積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先 後進國間의 技術隔差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先 後進國間의 貿易에 있어서 賦存資源 보다 技術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선진국은 高附加價値의 尖端産業에 있어서 활발한 技術交易을 통하여 技術의 比較優位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後進國은 技術交易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人の 特許登録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비록 우리나라가 아직은 技術輸入國의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先進國으로부터 활발히 技術을 輸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主要 先進國間에 特許登録에 있어서 貸借對照表라고 할 수 있는

(表 5) 우리나라와 主要先進國間의 特許登録 現況(1990年)

(단위: 건수)

| 외국등록 특허권자 | 韓 國 | 美 國 | 日 本 | 西 獨 | 프랑스 | 대외국등록 (A) | 대자국등록 (B) | A/B(%) |
|--------------|-------|--------|--------|--------|--------|--------------|--------------|--------|
| 韓 國 | 2,554 | 227 | 15 | 35 | 13 | 379 | 2,554 | 14.8 |
| 美 國 | 1,198 | 47,393 | 4,112 | 7,289 | 6,526 | 71,139 | 47,393 | 150.1 |
| 日 本 | 3,475 | 19,524 | 50,370 | 7,448 | 4,771 | 53,890 | 50,370 | 107.0 |
| 西 獨 | 128 | 7,576 | 1,925 | 16,625 | 7,064 | 57,123 | 16,625 | 343.6 |
| 프랑스 | 95 | 2,866 | 695 | 2,842 | 8,923 | 25,197 | 8,923 | 282.4 |
| 외국인등록(C) | 5,208 | 42,973 | 9,031 | 26,235 | 26,226 | | | |
| 전체등록(D) | 7,762 | 90,366 | 59,401 | 42,860 | 35,149 | | | |
| C/D(%) | 67.1 | 47.6 | 15.2 | 61.2 | 74.6 | | | |

資料 : 『特許廳 年報』1993. 特許廳.

特許收支현황을 <表 5>에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年 內國人的 特許登錄은 2,554件이고 外國人的 特許登錄은 5,208件으로 외국인의 특허등록이 總 登錄件數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特許登錄面에서 技術輸入國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外國에 대한 登錄이 1990年 總 379件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이 美國에 집중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특허등록면에서 外國보다는 國內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技術輸出國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對外國 特許登錄에 소홀하다는 점도 示唆해주고 있다. 主要 先進國들은 自國뿐만 아니라 外國에 대한 特許登錄을 매우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自國의 기술을 外國市場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自國技術의 輸出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先進國은 이와 같이 外國에 特許登錄을 통하여 자국의 知的財産權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開途國에 비하여 對外國 特許登

<表 6> 美國特許의 外國人 取得 現況

| 國 名 | 1992 | | 1991 | |
|---------|---------|------|---------|------|
| | 特許登錄數 | % | 特許登錄數 | % |
| 日本 | 23,481 | 21.4 | 21,463 | 21.4 |
| 獨逸 | 7,960 | 7.3 | 7,548 | 7.4 |
| 프랑스 | 3,332 | 3.0 | 3,094 | 3.0 |
| 英國 | 2,851 | 2.6 | 2,974 | 2.9 |
| 캐나다 | 2,311 | 2.1 | 2,184 | 1.4 |
| 이탈리아 | 1,455 | 1.3 | 1,379 | 1.4 |
| 스위스 | 1,369 | 1.2 | 1,384 | 1.0 |
| 臺灣 | 1,195 | 1.1 | 1,000 | 1.0 |
| 네덜란드 | 1,019 | 0.9 | 1,043 | 0.8 |
| 스웨덴 | 747 | 0.7 | 843 | 0.5 |
| 오스트레일리아 | 550 | 0.5 | 550 | 0.4 |
| 韓國 | 543 | 0.5 | 413 | 0.4 |
| 오스트리아 | 424 | 0.4 | 367 | 0.3 |
| 벨기에 | 382 | 0.3 | 356 | 0.3 |
| 이스라엘 | 377 | 0.3 | 304 | 2.0 |
| 其他 | 1,972 | 1.8 | 2,075 | |
| 外國人 合計 | 49,968 | 45.5 | 46,978 | 48.1 |
| 全體 | 109,728 | 100 | 101,860 | 100 |

年度 : 會計年度 기준 (9월 30일 끝남).

資料 : 미국 상표특허청.

錄面에서 결코 뒤지고 있지는 않지만 先進國 水準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外國 特許登錄이 美國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年(會計年度) 美國特許 登錄現況을 살펴볼 때, 臺灣이 外國人의 對 美國特許登錄 순위에서 8位를 차지하였음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2位를 차지하였다(<表 6> 참조). 우리의 輸出 競爭相對國인 臺灣에 비해 美國特許 占有率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對外國 特許登錄에 있어서 분발이 요구된다.

IV. 知的財産權과 國際貿易理論

先 後進國間의 貿易問題를 분석하는 基本模型으로 흔히 North-South 貿易模型이 있다. 이는 先 後進國間의 非對稱性을 模型內에 特許화시킴으로써 先 後進國間의 貿易樣式, 貿易政策의 效果 등을 分析하기 위한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일반적으로 知的財産權 保護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後進國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後進國이 先進國 수준으로 知的財産權 保護의 강도를 높일 경우 어떤 經濟的 效果가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하게 된다. Chin-Grossman (1990)은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技術開發은 先進國에 집중해 있고, 後進國은 전혀 技術開發의 能力 및 可能性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非對稱的인 두 지역간의 貿易은 後進國의 知的財産權 保護政策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하게 되고, 양 지역의 厚生의 變化를 가져온다.

Chin-Grossman은 先進國의 企業이 生産費를 절감하는 新技術開發을 했을 때, 舊技術을 사용하는 後進國의 企業과 競爭을 벌이는 複點市場(Duopoly)을 가정하고 있다.³⁾ 이들은 後進國에서 知的財産權의 保護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경우와 그렇지 못하여 後進國 企業이 先進國의 新기술을 모방할 경우의 國際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의 변화와 양 국가의 후생의 變化를 比較, 分析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知的財産權의 효과적인 보호로 後進國 企業의 新기술 모방이 불가능해지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新技術을 개발한 先進國 企業의 市場占有率은 증가하고

3) Chin-Grossman의 模型에서 先進國 企業의 技術開發投資는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불완전경쟁하에서만 技術開發投資가 발생한다. 複點은 모형의 단순화를 위한 假定에 불과하다.

先進國의 厚生은 증가한다.

- ② 新技術 開發로 보다 效率的인 生産方式이 채택됨으로써 消費者 厚生이 증가한다. 더우기 生産費用의 절감이 매우 큰 혁신적인 技術開發은 비록 후진국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게 되어 先進國 企業의 독점이 초래될 수 있지만 消費者 厚生の 증가도 매우 크게 된다.
- ③ 新技術 開發로 인하여 후진국 기업의 市場占有率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후진국의 후생감소분과 消費者 厚生の 증가분을 비교하여 後進國의 전체적인 후생변화를 고려한다. 대체로 技術開發의 성과가 미미한 경우 消費者 厚生の 增加效果가 그다지 크지 않게 된다. 이 경우 知的財産權 保護로 인하여 후진국의 전체적인 厚生은 감소하게 된다.

Chin-Grossman의 分析이 시사하는 바는 知的財産權 保護의 厚生增大 效果는 技術開發의 生産性이 높은 산업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편 技術開發의 生産性이 낮은 産業에서는 知的財産權 保護 強化로 인한 技術開發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경쟁제한으로 인한 厚生の 손실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iwan-Rodrik (1991)의 분석은 Chin-Grossman의 模型의 가정들을 보다 現實化하여 여러 가지 比較靜學分析을 시도하였다. 특히 先 後進國間의 기술에 대한 選好度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主要 結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先 後進國 모두 知的財産權 保護가 강화될수록 先進國의 技術開發은 활성화 된다.
- ② 後進國의 知的財産權 保護가 강화될수록 後進國에 적절한 기술(後進國이 선호하는 기술)이 보다 잘 공급되어진다.
- ③ 세계전체의 厚생을 고려할 때, 先 後進國間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게 되면 先 後進國間에 동등한 知的財産權 保護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後進國에 가중치를 더 줄수록 두 地域의 知的財産權 保護의 차이는 크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後進國의 知的財産權 保護가 상대적으로 미약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 ④ 두 地域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極大化하는 방향으로 知的財産權 보호수준을 결정할 경우, 두 지역의 選好度가 비슷할수록 두 지역 모두 保護 水準이 낮아진다.

⑤ 後進國의 市場規模가 커질수록 두 지역 모두 知的財産權 保護水準이 낮아진다.

한편 Beath(1990)와 Deardorff(1992)는 Simulation을 이용하여 後進國의 知的財産權(特許權) 보호를 강화할 경우 세계전체의 厚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Beath는 特許權의 보호기간이 10年인 경우와 17年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17年인 경우 세계전체의 후생이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동일한 特許權 保護期間(17年)하에서 後進國의 模倣이 활발할수록 오히려 세계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Beath의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特許를 통한 보호기간을 다소 높게 책정한다 할지라도, 開途國에게 어느정도 모방이 허용됨으로써 競爭이 활성화되고 때로는 先進國의 技術開發投資도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eardorff는 特許의 地域的 範圍가 확대되는 것이 特許期間의 延長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特許發明이 어느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他國家로 特許權 보호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他國家의 厚生을 감소시킨다. 더구나 이러한 후생의 감소는 發明國의 후생증대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다. 또한 그는 開途國들이 점차 독자적인 技術開發能力이 제고됨에 따라 일부 開途國에 特許權의 地域的 範圍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 등 전혀 技術開發能力이 없는 국가들은 特許保護의 대상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소개된 研究들은 靜態的 分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技術革新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動態的 觀點에서 知的財産權 保護가 강화됨에 따라 經濟成長, 貿易 그리고 厚生의 變化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Helpman(1992), Wang(1992), Taylor(1993) 등은 動學的 一般均衡理論에 기초하여 知的財産權의 保護問題를 분석하고 있다.

Helpman(1992)은 新製品의 발명이 先進國에 집중되어 있고, 後進國은 모방에 주력하는 가상적인 國際經濟模型을 상정하고 있다. 新製品의 발명은 水平的 商品差別度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先 後進國間의 무역양식은 先進國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後進國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모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製品의 壽命週期 현상이 Helpman의 모형내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그는 知的財産權 보호를 模倣이 완전히 불가능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지 않고, 모방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知的財産權 보호의 강도가 모방속도를 결정한다. 주요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적으로 定常均衡下에서 知的財産權 保護 強化에 따른 經濟成長 效果는 없다. 즉 知的財産權 보호 강화에 따른 장기적인 기술혁신 속도는 늦어진다.⁴⁾
- ② 장기적으로 定常均衡下에서 後進國은 輸出對象品目이 줄어들고 교역조건의 악화로 厚生의 감소가 초래된다.
- ③ 장기균형으로 이행하는 經路에 있어서 초기에 技術革新 속도는 知的財産權 보호로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기술혁신 속도는 상당히 늦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기적으로 知的財産權 보호로 선진국 기업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고 技術開發에 따른 기대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技術革新의 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先 後進國間의 技術隔差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전체상품에서 先進國 企業들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商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기술혁신에 따른 期待收益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균형점에 도달하면 技術革新의 속도는 知的財産權 保護強化로 인하여 오히려 늦어진다.
- ④ 장기적으로 知的財産權 保護는 신상품 개발의 속도를 늦어지게 하므로 先 後進國 모두 消費者 厚生이 감소한다.
- ⑤ 장기적으로 先 後進國 모두 전체적인 厚生은 감소한다.

Helpman의 이상의 결과는 知的財産權의 보호로 인하여 後進國에서의 모방이 제약될수록 오히려 先進國의 技術開發의 속도가 늦어지고 양 지역에서의 후생이 모두 감소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知的財産權 보호에 대하여 매우 懷疑的인 結論을 도출하고 있다.

Helpman의 결과와는 반대로 Taylor(1993)는 두 나라의 交易에 있어서 자국의 발명에 대해서만 保護를 취하는 차별적인 知的財産權 保護政策은 기술개발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經濟成長率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4) Grossman-Helpman(1991c)은 先進國의 技術開發 추종자가 비효율적인 경우 發明家와 모방자 사이의 相互作用이 技術革新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 경우 模倣은 技術革新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 또한 Wang(1992)은 先進國이 技術開發에 特化하고 後進國은 技術貸貸를 통하여 이전된 技術을 이용하여 生産에 特化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資源配分の 效率性이 提高되고 技術開發의 速度가 빨라지게 되어 양 지역 모두 厚生의 증대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研究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知的財産權 保護 강화가 과연 國際貿易 및 經濟成長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단언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研究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 ① 知的財産權 保護는 경쟁제한적인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新商品, 新技術의 開發이 촉진됨에 따라 消費者에게 보다 다양한 商品이 공급되고, 더욱 質이 좋고 저렴한 商品이 공급되므로 消費者厚生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知的財産權 保護가 반드시 技術開發의 增大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資源配分이 중요하다.
- ③ 開途國의 입장에서 知的財産權 保護는 모방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知的財産權 保護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효과적인 技術移轉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技術貸貸나 直接投資를 통한 技術蓄積 方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知的財産權 國際化와 開途國의 經濟發展

美 貿易代表部가 매년 발표하는 『國別 知的財産權 保護實態評價報告書』를 보면 知的財産權의 침해가 심각한 나라들이 대부분 開途國中에서 高速成長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技術蓄積度가 높은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韓國, 臺灣, 브라질 그리고 최근 新興工業國으로 발돋움하는 泰國,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손꼽을 수 있다. 다만 印度는 開途國 中에서 低所得國家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技術蓄積은 많이 이루어진 國家이다.

最近의 新成長理論의 주창자들은 經濟成長의 원천으로서 知的資本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Lucas(1988), Romer(1990) 등은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人間의 知識과 情報의 蓄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各國의 相異한 經濟發展 水準과 成長率의 差異가 各國의 知的資本

의 水準과 知的資本의 蓄積率에 의해 決定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技術로서 體化되는 知的資本의 蓄積은 先進國으로부터의 效果的인 技術導入과 점차 獨自的인 技術開發能力의 向上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冷戰體制下에서 先進國은 開途國의 經濟發展을 持援한다는 취지하에서 資本과 技術의 移轉에 그다지 인색하지 않았다. 또한 自由貿易秩序의 體制속에 開途國의 積極적인 參與를 유도하기 위하여 開途國에 대해서는 一般特惠關稅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舊蘇聯의 붕괴를 비롯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世界經濟의 새로운 변모속에 市場經濟原理가 國家間의 競爭에 적용되기에 이르렀고 일부 開途國들은 開途國으로서의 지위를 졸업한다는 명분하에 先進國으로부터 심한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開途國 無差別化는 先進國의 對 開途國 關係의 새로운 原則으로 점차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知的財産權 國際化는 先進國의 對開途國 關係의 變化를 잘 보여주는 一例이다. 즉 知的財産權 國際化는 종래의 開途國의 不完全하고 미흡한 知的財産權 保護制度를 先進國 水準으로 끌어올리고 國際적으로 統一화된 知的財産權 保護體制를 형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UR/TRIPS 協商過程에서 先後進國間의 극심한 對立이 보여주었듯이 知的財産權 國際化는 대체로 先進國에 유리한 반면에 後進國에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知的財産權 保護의 國際化는 獨自的인 技術開發能力이 현저히 不足한 開途國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다만 先進國의 技術이 保護받는 댓가로 先進國으로의 技術移轉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先進國은 技術開發에 特化하고 後進國은 移轉된 先進技術을 이용하여 製造業에 特化한다는 理想的인 國際貿易模型에 있어서는 先後進國間의 效率的인 資源配分效果로 인하여 兩國이 모두 經濟的 厚生이 증가될 수 있는 蓋然性이 있음을 아울러 발견하였다.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要諦는 과연 상이한 經濟發展水準과 經濟發展의 方向목표가 다른 國家들에 있어서 國際적으로 統一화된 知的財産權 制度를 정착시킬 수 있는나이다. 이미 先進國型의 知的財産權 制度를 갖추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경우 兩國은 상이한 정책목표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經濟的 效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rdoover(1991)는 美國은 知的財産權 保護가 창작자의 발명을 보호하여 발명으로부터의 이익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한다는 發明

의 私的價値를 社會的 價値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美國의 制度는 知的財産物의 배타적 소유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는 日本에서는 창작자의 발명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개됨으로써 실용화되고, 또한 추가적인 應用發明과 新發明을 위한 기초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知的財産物의 公共財의 役割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日本은 對開途國 技術移轉에 인색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知的財産權 制度의 운용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日本의 국내산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Ordovery가 관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美國의 경우 特許가 등록된 이후 비로소 特許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고 또한 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美國은 발명이 他企業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도록 制度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 출원 후 등록되기 이전에 特許의 내용이 공표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先出願主義로 인하여 特許紛爭이 빈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cross-licensing을 통하여 特許紛爭을 해소한다는 知的財産權 운영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日本은 국내기업들간에 소모적인 특허분쟁에서 벗어나 각 업체가 보유한 特許技術을 교환하여 技術競爭力을 확보하려는 cross-licensing을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키고 있으며 外國의 특허 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과 日本의 特許制度 운영상의 차이점은 特許의 양면적 특성, 즉 技術의 保護와 公開라는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特性에 정책적 강조점을 두느냐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先進國間에도 知的財産權 制度의 실질적 운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先進國은 開途國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자국의 기술이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先進國에 비하여 技術水準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開途國에 있어서 知的財産權 國際化는 오히려 차별적인 接近法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特許의 保護期間, 保護範圍의 國際的 統一化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特許의 保護期間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냐는 Nordhaus(1969)의 最適特許期間에 관한 이론은 특허보호의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Nordhaus에 따르면 最適特許期間은 시장수요의 탄력성, 시간선호율과 逆의 關係에 있으며 R&D 수익에 正의 關係에 있다. 따라서 産業別로 最適特許期間은 지적인 諸要因들에 의하여 상이하게 결정되게 될 것이

다. Nogue(1990)는 대체로 특허보호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질 경우 후생적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最適特許期間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길어질 경우 특허기간의 차이로 인한 厚生の 변화는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産業別뿐만 아니라 國家別로 상이한 특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특허행정의 복잡성만 야기시킬 뿐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특허기간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특허기간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한다고 할 경우 TRIPs 協定文과 같은 出願日로부터 2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

현재 國際的인 特許法 統一化의 방향이 出願日로부터 20년으로 特許의 保護期間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特許出願으로부터 商業化까지 5년, 그리고 Nordhaus 理論에 의거한 最適特許 保護期間이 대체로 15년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特許의 保護期間 산출은 先進國의 산업구조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일 뿐이지 開發國의 技術開發能力과 費用, 産業構造 등을 고려한 엄밀한 실증분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特許保護期間이 出願日이 아니라 出願公告日로부터 15년이므로 대체로 TRIPs 協定文의 규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特許保護期間의 통일화에 대해서는 開發國의 技術 및 産業與件을 고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特許의 보호범위의 통일화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우선 特許의 보호 대상에 대해서는 先進國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動物變種을 특허대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최근까지 美國이 유일하였으며 日本이 이에 동참하였다. EC 등이 動物變種에 관련한 발명에 대한 보호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경제외적인 도덕적인 이유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開發國은 의약에 관련한 보호를 이른바 "Basic Needs"라는 근거로 보호대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뿐만 아니라 農植物에 관련된 대부분의 발명이 開發國의 입장에서는 생계와 관련한 기초적인 生必需品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先進國과 같이 社會保障制度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한 開發國에 있어서 의약품의 실질적인 보급, 生必需品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특허보호대상으로부터 일부 품목들은 제외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후 物質特許가 도입되고 特許의 보호대상은 매우 포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심지어 雙務的 協商을 통하여 未市販物質에 대한 보호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대상이 범위보다 중요

한 것은 本源發明에 의거한 引用發明의 特許로서의 보호문제이다. 本源發明에 비하여 창작적 요소는 작지만 應用的 發明으로서 상업적 가치를 지닌 발명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引用發明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점차 우리의 技術開發能力이 향상됨에 따라 本源發明이 國內發明의 주종을 이루게 되면 引用發明의 인정범위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히려 引用發明에 대한 特許化는 기업간 cross-licensing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企業間 發明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結論적으로 知的財産權 國際化는 각국의 經濟發展 수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差別化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先進國 經濟로의 進入을 目前에 두고 있는 先發開途國의 경우 知的財産權 保護制度를 先進國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國內技術의 효율적인 開發과 外國技術의 효과적인 도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VI. 知的財産權保護와 直接投資

知的財産權의 보호 강화가 直接投資 유치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知的財産權 保護가 미흡할수록 先進國企業은 기술임대보다는 直接投資를 통하여 後進國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統制 監視하려고 할 것이므로 直接投資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知的財産權의 보호 강화가 直接投資에 直 間接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면밀히 分析하는 일은 技術移轉의 중요한 경로로 고려되고 있는 直接投資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先 後進國間의 直接投資를 결정하는 經濟的 要因으로 後進國의 費用條件, 市場規模, 人的資本의 水準, 社會間接資本의 發展程度, 그리고 全般的인 巨視經濟的 條件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勞使紛糾의 정도, 政治的 安定性 등 社會 政治的인 次要인들도 直接投資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이 되기도 한다. 지난 80年代를 돌이켜 볼 때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臺灣, 泰國 그리고 우리나라가 開途國 中에서 直接投資의 最適地로 손꼽혔던 것은 위에서 열거한 經濟的 要因들이 가장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知的財産權 保

護가 미흡한 국가들로 지적되고 있다. 브라질은 대표적인 知的財産權 侵害國으로 악명이 높은 데 반하여 直接投資는 1970年 1.5億 달러에서 1990年 21億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知的財産權 侵害國으로 주목받고 있는 泰國의 경우 80年代 후반부터 直接投資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知的財産權 침해로 인한 否定的 側面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否定的 側面을 충분히 중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이 이들 국가의 경우 매우 유리했던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⁵⁾

한편 印度의 경우 知的財産權의 침해가 심각한 國家로 지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直接投資의 규모는 작다(<表 7> 참조).

知的財産權 保護와 直接投資와의 相關關係를 살펴봄에 있어서 全般的인 知的財産權 保護가 直接投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結論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産業別로 특정의 知的財産權 保護가 直接投資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産業의 경우 아직은 開途國의 半導體칩에 관한 保護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保護가 미흡한데, 이로 인하여 先進國의

<表 7> 主要 開途國의 直接投資 流入 現況 (1980-1990)

(單位 : 百萬달러)

| 國 名 | 1980-85 平均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 아르헨티나 | 519 | 574 | -19 | 1,147 | 1,028 | 2,036 |
| 브 라 질 | 1,975 | 320 | 1,225 | 2,969 | 1,267 | 2,118 |
| 칠 레 | 212 | 60 | 105 | 125 | 269 | 595 |
| 멕 시 코 | 133 | 1,523 | 3,246 | 2,594 | 3,037 | 2,632 |
| 콜롬비아 | 502 | 674 | 319 | 203 | 576 | 501 |
| 베네수엘라 | 111 | 16 | 21 | 89 | 213 | 451 |
| 中 國 | 718 | 1,875 | 2,314 | 3,194 | 3,393 | 3,489 |
| 印 度 | 62 | 118 | 212 | 91 | 252 | 129 |
| 韓 國 | 98 | 435 | 601 | 871 | 758 | 715 |
| 필 리 핀 | 35 | 127 | 307 | 936 | 563 | 530 |
| 싱 가 폴 | 1,330 | 1,710 | 2,836 | 3,647 | 4,212 | 4,808 |
| 臺 灣 | 185 | 326 | 715 | 959 | 1,604 | 1,330 |
| 泰 國 | 264 | 263 | 352 | 1,105 | 1,777 | 2,376 |

資料 :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Management Division.
『World Investment Report』1992.

5)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先進國水準에 부합되는 知的財産權 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經濟的 여건이 直接投資를 유치할만큼 적합하지 못하다.

直接投資는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開途國의 立場에서 先進國의 直接投資를 유치하는 目的은 先進技術이 現地法人을 통하여 國內企業에 확산되는 이른바 技術移轉效果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知的財産權 保護가 미흡할 경우 先進國의 企業들은 技術保護의 必要性이 상대적으로 적은 舊技術을 이용한 단순제조업 부문에 直接投資를 하게 되어 尖端技術을 보유한 先進國企業의 直接投資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自力으로 技術開發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技術保護主義로 인하여 尖端技術分野의 技術導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尖端技術의 흡수를 위해서는 外國人 直接投資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知的財産權 保護強化가 필요하다.

經濟發展段階에 따른 外國人 直接投資(Inward FDI)와 海外直接投資(Outward FDI)의 유형변화를 정리하면 <圖 1>과 같다. M. Porter(1990)는 일국의 經濟發展의 원동력이 되는 競爭力의 源泉이 生産要素→投資→技術革新→富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富에 의한 國家競爭力은 經濟의 浮沈에 따라 쉽게 소멸될 수 있으며 國際投資에 있어서 直接投資 보다는 金融投資(portfolio investment)의 비중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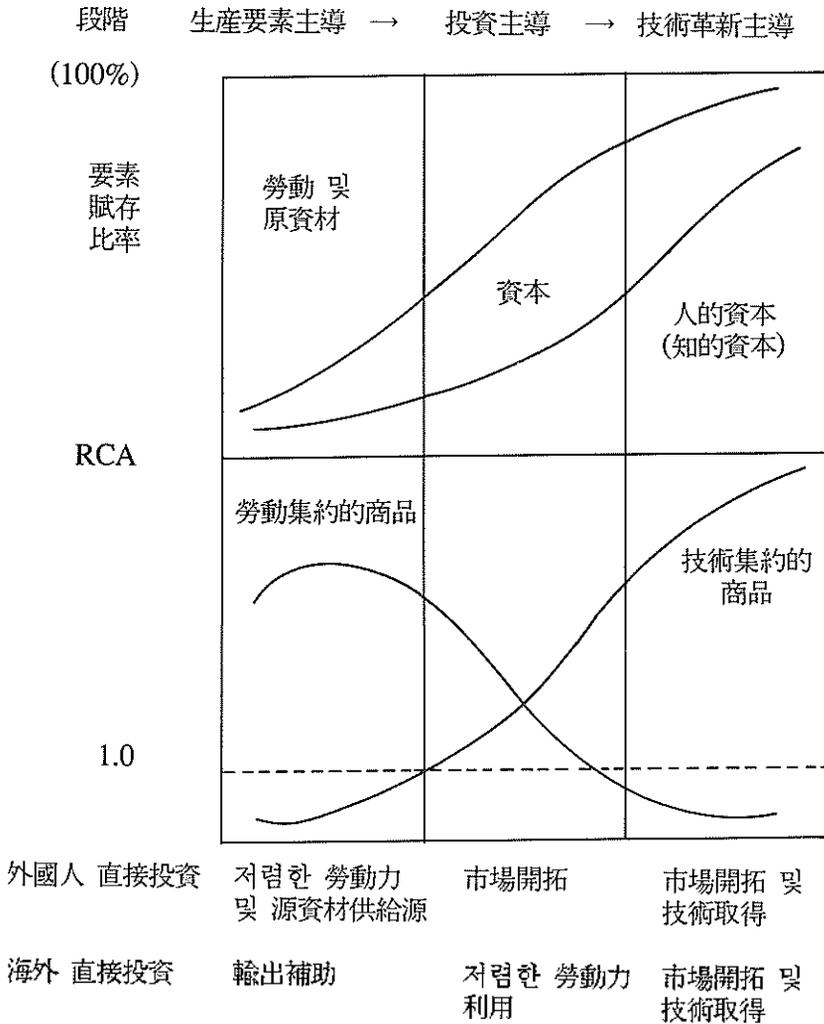
第1段階인 生産要素에 의해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要素賦存에 따라 比較優位商品도 勞動集約的 商品 혹은 一次商品이 주종을 이룬다. 外國人 直接投資는 주로 저렴한 勞動力이나 一次商品의 供給地로서의 重要性이 고려되어 이루어지며 海外直接投資는 수출보조적인 측면이외에는 특기할만한 점이 없다.

第2段階인 投資에 의해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입하면, 점차 資本蓄積이 심화되면서 資本集約的 商品의 수출비중이 증대된다. 外國人 直接投資도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른 市場開拓을 목적으로 하고, 海外直接投資는 국내 노동력의 상대적인 비용상승으로 보다 저렴한 勞動力을 이용할 수 있는 後進國으로 점차 진출하게 된다.

第3段階인 技術革新에 의해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입하면, 要素賦存에 있어서 人的資本(혹은 知的資本)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比較優位商品도 技術集約的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外國人 直接投資는 國內市場의 수요증대에 따른 시장개척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점차 國內技術을 취득하기 위한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海外直接投資도 市場開拓, 技術取得의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第2段階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80年

〈圖 1〉 經濟發展段階에 따른 直接投資 類型的 變化



代 中반 이후 급격한 貨金上昇으로 인하여 勞動集約的 商品의 比較優位는 거의 消盡되었으며 外國人 直接投資도 저렴한 勞動費用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外國人 直接投資의 유치를 위해서는 內需市場의 확대와 直接投資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多國籍企業의 營業環境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海外 直接投資는 中國, 東南亞 등 우리나라보다 노동비용이 저렴한 國家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第3段階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國內의 知的資本의 확충이 필

요할 것이다. 적극적인 技術開發, 技術導入을 통하여 技術蓄積을 도모하고 人的資本의 質을 高度化해야 할 것이다. 이에 比較優位商品도 技術集約의 특성을 지니게 됨에 따라 先進國과의 技術交易를 통하여 技術蓄積의 加速化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對 先進國 海外直接投資에 있어서는 우리자본의 全額投資에 의한 直接投資 보다 先進企業과의 戰略的 提携(Strategic Alliance), 혹은 引受, 合併 등을 통하여 先進技術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先進企業의 引受, 合併은 先進企業이 보유한 特許를 우리기업이 공유함으로써,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先進技術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現地法人의 적극적인 R&D를 통하여 先進國의 情報과 知識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開途國의 입장에서 볼 때 知的財産權 保護가 直接投資를 活性化하고 결과적으로 技術移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知的財産權 保護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하나일 것이다. 知的財産權 保護가 直接投資 유치에 도움을 준다고 간주할 때,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과연 直接投資가 技術移轉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다.

直接投資는 現地法人을 통하여 현지의 勞動力을 고용함으로써 現地雇傭人의 學習效果가 발생하도록 한다. 先進國의 多國籍企業이 後進國에 진출할 때, 잠재적 市場需要의 開發, 生産原料의 확보 등의 요인도 중요하지만 生産費用의 절감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未熟練勞動만을 고용하는 單純製造業이 아닌 경우 중요한 것은 先進國의 熟練勞動에 비하여 勞動의 質이 떨어지지 않는 저렴한 後進國의 熟練勞動이 존재하느냐이다. 直接投資에 의하여 이러한 後進國의 熟練勞動의 學習效果가 발생한다고 해서 技術移轉이 自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技術移轉은 同種의 商品을 생산하거나 혹은 先進國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競爭企業이 後進國에서 生成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後進國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 競爭企業이 존재한다고 할 때, 直接投資는 技術을 後進國市場에서 어느 정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技術移轉의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80年代 이후 日本의 多國籍企業은 少數持分の 非資本的 참여형태의 海外直接投資를 韓國, 臺灣 등 新興工業國을 대상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非資本的 참여형태의 直接投資는 현지에서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건설하고 소유에 의해 經營統制權을 행사하기보다는 技術協力契約, 販路提供契約, 經營管理契約, 턴키베이스契約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은 現

地企業에 技術, 經營上의 노하우 등 보이지 않는 資産을 제공하고, 現地企業은 이를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技術力이나 經營管理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韓國이나 臺灣 등 新興工業國은 先進國 多國籍企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非資本的 參與형태의 直接投資의 대상지로 적합하다. 한편 新興工業國의 입장에서 多國籍企業의 본격적인 진출 없이 필요한 技術이나 노하우(know How)를 선별적으로 들여오므로써 多國籍企業이 제공하는 技術이나 노하우(know How)가 現地國의 經濟與件에 적합하다는 잇점이 있다.

한편 現地法人의 技術開發投資는 直接投資가 技術移轉 및 技術蓄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다. 최근 先進國의 多國籍企業은 現地法人이 직접 技術開發에 참여하는 技術開發投資의 國際化를 활성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現地法人이 본국에서 개발된 技術을 변형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現지에 직접 技術開發研究所를 설립하고 本國의 母企業과 유기적인 情報網을 형성하기도 하고 혹은 독자적인 研究開發體制를 형성하기도 한다.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製品壽命週기가 짧아지고,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技術開發에 있어서 現地法人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主要 先進國의 多國籍企業에 있어서 現地法人을 통한 技術開發投資는 주로 先進國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直接投資의 국제적 흐름이 주로 先進國間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롯되고 있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技術開發投資의 外部效果가 先進國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美國과 같이 技術開發投資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技術開發에 유용한 知識과 情報가 풍부할 것이므로 外國人 現地法人의 技術開發投資의 성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人 直接投資를 유치하고 技術移轉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 적극적인 海外市場進出을 통하여 先進國에 現地法人을 설립하고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것도 우리의 技術開發戰略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VII. 結論

國際交易에 있어서 開途國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先進國은 開途國의 經濟發展이 先進國의 축적된 科學 技術의 不法盜用과 같은 無賃乘車에서 비롯됐다는 입

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知的財産權 保護問題는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多者間 貿易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知的財産權 保護의 國際化는 國際貿易秩序의 규범으로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本 研究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技術은 比較優位の 결정요소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하고 있으며 國際貿易에 있어서 競爭力은 各國이 보유하고 있는 技術의 스톡(stock)과 技術開發의 速度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技術開發은 比較優位를 창출하는 것이고 知的財産權은 比較優位の 결정요소로서의 技術을 권리화한 것이다. 이에 知的財産權 保護는 技術開發을 장려하고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經濟發展過程에서 자발적인 技術開發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고 불가피하게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부족한 국내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그러나 知的財産權 保護가 미흡했던 여건하에서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나 模倣은 技術革新 意慾을 감퇴시키고 技術輸入으로부터 잉여를 취득하고자 하는 非生産的 剩餘追求活動의 汎濫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國際競爭力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국제경제여건하에서 國際的인 技術保護主義의 팽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尖端技術의 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우리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技術開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知的財産權 保護는 우리 경제에 模倣보다는 創造에 가치를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며 한편으로 尖端技術의 移轉이 직접적인 技術輸入을 통해 이루어지기 힘든 현재의 국제기술시장의 여건하에서 直接投資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하나이다.

知的財産權 保護의 國際化를 단순히 협상과제로만 인식해온 近視眼的 對應戰略과 知的財産權 保護가 우리경제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被害意識을 지양하고 우리경제의 先進化, 國際化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知的財産權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知的財産權 保護가 우리기술을 培養하고 先進技術을 效果的으로 習得함으로써 總體的인 우리기술과 지적자본의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制度의 활용에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eath, John, 1990,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Uruguay Round," *The World Economy* 13, pp. 411-426.
- Chin, J.C. and G.M. Grossman, 199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North-South Trade," in R.W. Jones and A.O. Krueg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Essays in Honor of Robert E. Baldwin*,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Deardorff, Alan V., 1992, "Welfare Effects of Global Patent Protection," *Economica* 59, pp. 35-52.
- Diwan, I. and D. Rodrik, 1991, "Patents, Appropriate Technology and North-South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0, pp. 27-48.
- Evenson, Robert E., 199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D, Inventions, Technology Purchase, and Piracy in Economic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n *Science and Technology*, Robert E. Evenson and Gustav Ranis (eds.), Westview Special Studies in Science,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 Grossman, G.M. and E. Helpman, 1991, "Quality Ladders and Product Cycl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pp.557-586.
- Helpman, E., 1992, "Innovation, Imi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BER, WP. #4081.
- Lucas, Robert E. J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pp. 3-42.
- Nogues, J., 1990, "Notes on Patents, Distortions and Development," World Bank PPR Working Paper 315,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Nordhaus, W.D., 1969, *Invention, Growth and Welfare: A Theoretical Treatment of Techn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 Ordober, J.A., 1991, "A Patent System for Both Diffusion and Exclus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5, pp. 43-60.

-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 Romer, Paul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S91-S102.
- Taylor, Scott M., 1993, "TRIPs, Trade and Growth," Discussion Paper No. 93-03,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Wang, Yunjong, 1992, "North-South Trade with Endogenous Technology Transfer," Yale University, mimeo.